



CITY OF HOUSTON(휴스턴시)

타이틀 VI 정책 성명서

City of Houston에서는 1964년도 제정 Civil Rights Act(시민권리법) 타이틀 VI, 49 CFR, 파트 21, 그리고 관련 규정 및 지침 전체를 준수하기로 다짐하는 바입니다.¹ 일체의 City of Houston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하에 본 시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영어 능숙도를 근거로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 하도록 배제되거나 차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City of Houston은 더 나아가 전력을 다하여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서 이들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가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하든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차별금지를 확실히 구현하도록 합니다. City of Houston이 연방 보조 기금을 다른 주체에 배분할 경우, City of Houston은 전체 서면 계약서의 타이틀 VI 언어를 포함하고 준수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City of Houston은 소수 인종 및 저소득 인구층의 환경정의의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행동에 관한 행정명령 12898 호에 따라,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영향력 일체의 결과로서 또한 모든 노력을 저소득자 및 소수집단의 차별을 방지하는 데 경주하기로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City of Houston은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방법 개선안인 행정명령 13166 호에 따라, 의미 있는 접근권을 영어 능숙도가 제한적인 자에게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964년 제정 Civil Rights Act(시민권리법) 타이틀 VI 및 관련 연방 및 주의 차별금지법 판례 근거/관계당국에 따라 보복을 금합니다. 차별대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주민들은 보복, 방해, 협박, 강요, 또는 양갈음의 두려움 없이 제소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금지된 차별대우의 구체적 형태

City of Houston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차별대우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의 금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프로그램하에 제공한 서비스, 재정 지원, 또는 기타 혜택의 거부.
- 혜택이 주어지는 품질, 수량, 또는 방식의 차별.
- 본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도 사람의 차별 또는 구분.
- 타인들에게 제공된 일체의 이득, 특권, 또는 기타 수혜의 제한.
- 참여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나 요건.
- 직접 또는 간접 또는 우선적 계약관계가 효과적인 차별금지의 달성을 무산 또는 손상시키려는 행정 방식.
-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건설 또는 보수가 이루어진 고속도로, 기반 시설이나 시설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 또는 서비스상의 차별대우.
- 주 목적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원인이 되는 일체의 고용상 차별대우.

타이틀 VI에서 적용되는 City of Houston 프로그램 및 서비스

City of Houston의 타이틀 VI 계획은 자금 조달원에 무관하게 해당 주체의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 전체에 적용됩니다.

시장 John Whitmire
City of Houston, Texas

3/26/25

일자

¹ 다음을 포함한 관련 규정 및 지침:

- 1973년 제정 Rehabilitation Act(재활법) 504 절로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합니다.
- 1972년 제정 Education Amendments Act(교육수정법) 타이틀 IX로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합니다.
- 1975년 제정 Age Discrimination Act(연령차별금지법: ADA)로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합니다.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미국 국토안보부: DHS) 규정 6 C.F.R. 파트 19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합니다.